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나62688 판결 [사해행위취소]

---

##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유한회사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성윤

변 론 종 결 2021. 3. 23.

판 결 선 고 2021. 5. 18.

제1 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6. 5. 선고 2020가단5054926 판결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 중 2/7 지분에 관하여 2019. 9.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34,971,428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4,971,428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후 2주일 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2719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소송의 진행 도중 통상의 방법으로 소송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되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에는 처음 소장부분의 송달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송이 진행된 경우와 달라서 당사자에게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가 이러한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지 아니하여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면 이를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다4473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제1심법원이 피고의 주소지로 이 사건 소장 부분, 소송안내서, 답변서 요약표를 송달하였고, 피고의 자녀인 C이 2020. 3. 9. 이를 수령한 사실, 이후 제1심법원이 판결선고기일통지서(무변론)를 송달하였고, 위 C이 2020. 5. 14.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법원은 변경기일통지서를 송달하였고, 피고가 2020. 5. 14. 이를 수령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20. 5. 1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을 피고 주소지로 송달하였는데,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사실, 제1심법원은 2020. 6. 5. 제1심판결을 선고하고, 판결정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나 역시 폐문부재로 송달되지 아니하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2020. 7. 25.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C을 통하여 소장 부분을 송달받았다고 보아야 하고, 제1심법원의 변경기일통지서도 직접 송달받았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계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에게는 소송의 진행상황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알아볼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소송의 진행상황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아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제1심판결 정본의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이를 피고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항소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한, 판사 노태현, 판사 김창현

[별지]

## 부동산의 표시

### 1동의 건물의 표시

대구광역시 북구 I에 있는 J건물 K동

[도로명주소] 대구광역시 북구 L

###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번호 : M

건물내역 : 철근콘크리트조

면 적 : 60.0㎡

###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1. 대구광역시 북구 I 대 29098.9㎡

대지권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비율 : 29098.9분의 33.0695. 끝.

